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집 단 에 너 지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이를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검토 업무 등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 사유 판단에 필요한 범죄경력자료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규정 삭제(현행 제13조2 및 제13조3 삭제)

○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이 사업자와 사용자간 분담금으로 전

환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부령으로 규정

나. 권한 및 업무의 위탁(안 제30조)

- (업무위탁) 집단에너지 사업장 확인 점검 업무 신규 위탁하고, 현재
에공단에서 수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검토, △공급규정 관리, △공사계획 검토 업무 등의 위탁근거를 조
문에 반영

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안 제31의2)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 사유 판단에 필요한 범죄경력
자료 처리 근거 마련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는 범죄경력의 확인이 필요하나, 현행 조항
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만 규정

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근거 마련 (안 제5조)

- 재건축사업을 공급타당성 협의대상에 포함 하여 지역냉난방 공급
활성화 추진
- 에너지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에 대응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라목 중 “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2. 법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 검토
3. 법 제17조에 따른 공급규정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검토
5.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시설의 검사
6.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장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망의 구축·운영

제31조의2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

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를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 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 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 와 같다.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①-- ----- ----- ----- ----- -----.
1.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삭 제 나.·다. (생 략)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 른 <u>재개발사업</u>	1. ----- ----- 나.·다. (현행과 같음) 라. ----- ----- - <u>재개발사업 및 제2조제2 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u>
2. ~ 4. (생 략) <u>제13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법</u> <u>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u> <u>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u> <u>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u> <u>산정한다.</u>	2.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제13조의3(부담금의 부과방법) ①</u> <u>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u> <u>라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u> <u>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액, 산정</u>	<u><삭 제></u>

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사용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탁) (생략)

<신설>

제30조(권한의 위탁)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2. 법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 검토
3. 법 제17조에 따른 공급규정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검토
5.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시설의 검사

	<u>6.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장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u> <u>7. 법 제2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망의 구축·운영</u>
<u>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u>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생략)	<u>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①</u> ----- ----- ----- -----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3928